

## 「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04월 08일, 평창군수
- 회부일자 : 2020년 04월 20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55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0년 04월 24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교육체육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‘강원도 내 중·고등학생 교복 지원 사업’ 추진에 따라 시군별 상이한 지원기준과 집행절차를 통일하여, 대상자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가. 학생의 정의는 제4조의 지원대상과 중복되므로 삭제(안 제2조제2호)
- 나. 교복 지원 대상을 주소지에 상관없이 군 소재 중·고등학교 학생으로 변경하여 시군별 지원기준을 통일하고 대상자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  
(안 제4조)
  - 당초: 신청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 소재 중·고등학교 신입생과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학생

- 변경: 군 소재 중·고등학교 신입생과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학생
- 다. 지원방법에 타 기관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·정산의 편의 도모(안 제6조)
- 재정지원을 통한 타 기관과의 협력 사업으로 교복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12일 평창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, 2020년도부터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이 도-시군-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그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변경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,
- 주요 개정내용은
  - 안 제2조2에서는 안4조의 지원대상과 중복 되는 “학생”을 삭제하고,
  - 안 제4조에서는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교복 지원 대상을 주소지에 상관없이 군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변경하며
  - 안 제6조에서는 협력 사업 절차에 맞춰 추진코자 단서조항을 추가한 것으로,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제3조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평창군 소재 중·고등학교 신입생과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학생으로 한다.

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통한 타 기관과의 협력 사업으로 교복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세부기준에 따른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"<u>학생</u>"이란 <u>평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군 소재 중·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.</u></p> <p>3.·4. (생략)</p> <p>제4조(지원대상) <u>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 소재 중·고등학교 신입생과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학생으로 한다.</u></p> <p>제6조(지원방법) ① ~ ③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3.·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지원대상) <u>제3조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평창군 소재 중·고등학교 신입생과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학생으로 한다.</u></p> <p>제6조(지원방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④ <u>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통한 타 기관과의 협력 사업으로 교복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세부기준에 따른다.</u></p>